

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8년 11월 13일
-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(UNCED)에서 채택한 「의제21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업, 도민 등과 함께 민간 주도로 지구환경 보전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음
- 충청북도에서는 '97년 12월 「청풍명월21」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실천하고 있는 충북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의 기능(안 제2조)
- 협의회의 구성(안 제3조)
- 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(안 제7조)
- 경비지원 대상사업(안 제10조)
-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정산(안 제11조)
- 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
- 본 조례는 충청북도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
- 97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그 동안 조례의 제정을 하지 않고 운영한 사유와 타 광역단체의 운영실태에 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